

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통계교육원 -

2020. 11.

통 계 청

1.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통계교육원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통계교육원
- 감사범위 : 일반행정 및 인사분야, 예산·회계분야, 통계교육분야, 청렴·행동강령분야(갑질행위, 소극행정 포함) 등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 10. 15. ~ 10. 23.(7일간)
- 감사대상기간 : '17. 11. 1. ~ '20. 9. 30.까지(2년 11개월)
- 감사인원 : 감사반장(감사담당관) 등 10명

4. 감사중점사항

- 연도별 주요 교육 계획 및 실적 등 교육운영의 적정성
- 유연근무 실태 등 복무관리 적정성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예산집행 적정성
- 자체 행정규칙 준수 등 일반행정분야 업무처리의 적정성
- 갑질행위 근절 노력 및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등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명세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1)

제 목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부적정

소 관 청 통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에서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운영중인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관리(UBIS 시스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항’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 2020.1.)』 ‘4.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따르면 「‘1-3. 차량운행일지’를 ‘별지3’ 서식에 따라 ‘도착지’, ‘운행시간’, ‘운행거리(km)’, ‘운행거리누계(km)’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통계청은 UBIS 전산시스템 내 차량일지 메뉴를 이용하여 이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원은 공용차량을 운행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착지’, ‘운행시간’, ‘운행거리’, ‘운행거리누계’ 등을 UBIS 전산시스템 내 차량일지에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7.11.1.~2020.9.30.) 중 교육원의 공용차량 운행에 대한 차량운행 일지를 검토한 결과, 2019.10.2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참석’ 차 교육원에서 ◆도 ■시 ♠ 전시관까지 운행된 □ 차량(카니발)의 운행거리가 1,365km로 기입되어 있으나, 적정 왕복거리는 376km¹⁾로 확인되는 등 총 11건의 차량운행내역이 적정거리보다 과대 기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차량운행일지 운행거리 과대 기입내역

차량번호	차량종류	운행내용	차량일지 운행거리(km)	적정거리* (km)	과대기입 (km)
□	카니발	2019.10.2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참석’ 등 9건	6,412	3,162	3,250
♠	버스	2020.7.13. ‘예결위 설명회 참석’ 등 2건	1,482	885	597

* — 지도 ‘길찾기’ 기능을 이용한 추천경로 거리를 건별로 합산

또한, 2020.7.29. ‘☒ ■중 선도학교 컨설팅’ 차 교육원에서 ◆도 ☒시까지 운행된 □ 차량(카니발)의 운행거리를 -260km로 기입하는 등 총 2건을 착오 기입하였다. <표2> 참조

<표2> 차량운행일지 운행거리 착오 기입 내역

차량번호 (차량종류)	운행일	운행용도	출발지	도착지	차량일지 운행거리(km)
□ (카니발)	2020.7.29.	☒ ■중 선도학교 컨설팅	田시 <구 통계교육원	◆도 ☒시	-260
□ (카니발)	2017.12.13.	차량수리	田시 <구 통계교육원	田시 <구 ◀사	-1

한편, 관내 운행 중 2020.5.14. ‘차량정비점검’ 차 운행된 □(카니발) 차량의 운행거리가 48km로 기록되어 있으나 도착지가 ‘田시’로 기입되어 있는 등 총 6건의 부적정한 차량운행일지 기입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3> 참조

<표3> 차량운행일지 도착지 기입 부적정 내역

차량번호 (차량종류)	운행일	운행용도	출발지	도착지	차량일지 운행거리(km)
□ (카니발)	2020.5.14.	차량정비점검	田시 <구 통계교육원	田시	48

1) 적정 왕복거리는 — 지도 ‘길찾기’ 기능을 이용한 추천경로 거리로 계산

차량번호 (차량종류)	운행일	운행용도	출발지	도착지	차량일지 운행거리(km)
☐ (카니발)	2020.8.7.	대형버스수리결제, 어라운드뷰상담	田시 <구 통계교육원	田시	180
☐ (카니발)	2020.8.24.	물품구입 및 정비	田시 <구 통계교육원	田시	85
☐ (카니발)	2020.8.25.	◇전자 탭 업그레이드, 본청	田시 <구 통계교육원	田시	60
☐ (카니발)	2020.8.28.	본청, 운행점검	田시 <구 통계교육원	田시	170
♣ (버스)	2019.4.19.	◆ 환승오찬	田시 <구 통계교육원	田시 ◇구	657

그 결과,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및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 의견

교육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공용차량 관내운행 후 차량일지 작성 미비로 차량거리를 합산하여 기입하면서 과대기입이 발생하였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용차량 운행 후 즉시 차량 사용자 및 차량관리 담당자가 차량일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교육원장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2)

제 목 업무 인계·인수의 전자적 관리 미흡

소 관 청 통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의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나라 시스템(인계·인수)을 통해 전자적으로 업무 인계·인수를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2018.10.31.)』 ‘제11조(업무의 인계)제1항, 제2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2018.11.27.)』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5조(업무의 인계·인수)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규칙 ‘제47조(이 규칙에 따른 서식의 전자적관리)’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원 소속 공무원은 전보 등의 사유로 담당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등에 따라 온-나라 시스템의 인계·인수 메뉴를 통해 전자적으로 업무 인계·인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7.11.1.~2020.9.30.) 중 교육원의 온-나라 시스템을 통한 업무 인계·인수의 전자적 관리 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보 등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된 총 64건 중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업무 인계·인수를 미실시한 사례가 19건 (29.7%), 전자적으로 업무 인계·인수는 실시(45건, 70.3%) 하였으나 업무 인수자 및 입회자의 처리상태(인수요청→인수완료/입회요청→입회완료)가 완료(입회완료)되지 않은 건이 21건(46.7%, 인수요청 8건, 입회요청 13건)으로 업무 인계·인수 40건(62.5%)의 전자적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참조

<표> 업무 인계·인수 전자적(온-나라 시스템) 관리 현황('17.11.~'20.9.)

업무 변경 전체	업무 인계·인수 실시 및 처리상태			업무 인계·인수 미실시	
	입회완료	인수완료 / 입회요청	인수요청		
64건(100%)	45건(70.3%/100%)	24건(53.3%)	13건(28.9%)	8건(17.8%)	19건(29.7%)

그 결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등을 위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교육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직원들의 교육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전자적 업무 인계·인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교육원장은 앞으로 교육원 직원의 전보 등으로 업무담당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전자적 업무 인계·인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경 고 요 구 · 통 보

(일련번호 : 3)

제 목 ▽직 공무원 출장 복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통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2018.10.31.)』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9조(출장의 절차)’에 따르면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규칙 ‘제10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원 소속 공무원은 근무지내·외 출장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7.11.1.~2020.9.30.) 중 교육원 소속 ▽업무 공무원의 e-사람 복무처리 내역과 공용차량 운행일지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 ◆급 C는 2019.8.13. ‘신규 공무원 현충원(田 ●구) 참배’ 차 공용차량 운행업무를 수행하면서 e-사람으로 사전·사후 출장승인을 받지 않고, 출장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총 272건(2명)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표> 공용차량 운행 및 출장복무 미처리 내역

연번	소속	직급·성명	차량일지 운행내역	복무처리	비고
1	●과	◎급 B	2017.11.1. ‘문서사송 및 업무지원’ 등 246건	미처리	현 퇴직
2	●과	◆급 C	2019.8.13. ‘신규 공무원 현충원 참배’ 등 26건	미처리	

그 결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교육원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장업무 복무처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교육원장은

[경고] 동 건과 관련하여 출장업무 수행 시 복무처리를 소홀히 한 ●과 ◆급 A에게 “경고” 조치하오니 관련자에게 경고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향후 ▽직 공무원이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 교육 및 부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4)

제 목 교육과정 교육이수자 수료 통보 미흡

소 관 청 통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법률)』 및 『통계교육원 학칙(통계교육원훈령)』 등에 따라 매년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통계교육원 학칙(통계교육원훈령 제28호, 2019.10.22.)』 ‘제25조(수료)제3항’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 교육이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수시간을 명시하여 수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 교육이수자의 소속기관으로 수료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7.11.1.~2020.9.30.) 중 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전체 390건 교육과정(집합) 중 교육이수자 소속기관에 수료 통보를 기한(10일) 이후에 통보한 건이 28건으로 확인되었다. <표> 참조

<표> 교육과정(집합) 교육이수자 소속기관 수료 통보 현황('17.11.~'20.9.)

(단위 : 건)

연도	과정 수	기한(10일) 이내 통보			기한(10일) 이후 통보						
		전체	●과	○과	전체	●과			○과		
						11~15일	16~30일	31일 이상	11~15일	16~30일	31일 이상
'17년	21	21	0	21	0	0	0	0	0	0	0
'18년	138	127	1	126	11	0	4	2	4	1	0
'19년	138	128	3	125	10	1	4	0	5	0	0
'20년	93	86	1	85	7	3	3	1	0	0	0
합계	390	362	5	357	28	4	11	3	9	1	0

그 결과, 『통계교육원 학칙(통계교육원훈령)』 ‘제25조(수료)’ 규정을 위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교육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교육담당자에게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교육원 학칙(통계교육원훈령)』에 따라 교육이수자 소속기관 수료 통보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교육원장은 앞으로 『통계교육원 학칙(통계교육원훈령)』에 따라 교육이수자 교육수료 후 소속기관 수료 통보가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 5)

제 목	겸임교수 출제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통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에서는 『통계교육원 강사·자문 수당 등 지급 기준(통계교육원예규)』에 따라 겸임교수 등이 교육과정 평가를 위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출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통계교육원 강사·자문 수당 등 지급 기준(통계교육원예규 제79호, 2018.4.18.)』 ‘6. 시험관리비’에 따르면, 「객관식 문제 출제 시 1문제 당 외부강사는 15천원, 내부강사는 10천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 ‘3. 지급기준 나. 강사구분’에 따르면 「강사의 신분과 등급에 따라 외부강사는 특별강사, 일반강사로 나뉘며 그 외 내부강사, 보조강사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다. 동 규정 ‘10. 보칙 다. 겸임교수의 강사수당’에는 「통계교육원 겸임교수로 지정된 경우 일반강사의 강사수당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원은 겸임교수가 교육과정 평가를 위해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외부강사의 강사수당 기준을 적용하여 출제수당으로 1문제 당 15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7.11.1.~2020.9.30.) 중 교육원 겸임교수의 출제수당 지급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0년 제1기 국가통계실무1(2020.5.18. ~ 2020.5.21.)’ 과정의 객관식 문제를 18문제 출제한 ♣♣원 ●실 ○급 F(통계교육원 겸임교수)에게 출제수당 27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18만원을 지급하여 9만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총 4명에게 28만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참조

<표> 겸임교수 출제수당 과소지급 내역

소속	직급·성명	강의과정명	출제문항 (객관식)	수당 지급액	적정 지급액	과소 지급액
♣♣원 ●실	○급 F	2020년 제1기 국가통계실무1 (2020. 5. 18. ~ 2020. 5. 21.)	18	180,000원	270,000원	90,000원
통계청 (공로연수, 현 퇴직)	▽공무원 E	2020년 제1기 국가통계실무1 (2020. 5. 18. ~ 2020. 5. 21.)	8	80,000원	120,000원	40,000원
♣♣원 ●실	○급 D	2020년 제1기 국가통계실무1 (2020. 5. 18. ~ 2020. 5. 21.)	16	160,000원	240,000원	80,000원
♣국 ☒과	□급 A	2020년 제1기 국가통계실무4 (2020. 6. 8. ~ 2020. 6. 11.)	14	140,000원	210,000원	70,000원
합 계				560,000원	840,000원	280,000원

그 결과, 『통계교육원 강사·자문 수당 등 지급 기준(통계교육원예규)』 규정을 위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교육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통계교육원 강사·자문 수당 등 지급 기준(통계교육원예규)』 규정을 숙지하여 겸임교수 출제수당 지급 시 과소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향후 예규 개정을 추진하여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교육원장은

- ① 앞으로 겸임교수 출제수당 지급 시 과소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과소 지급한 출제수당 280,000원[통계청 ▽공무원 E(현 퇴직) 40,000원, ♣국 ☒과 □급 A 70,000원, ♣♣원 ●실 ○급 D 80,000원, ○급 F 90,000원]을 추가지급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6)

제 목 기타운영비 등 예산집행 과목 부적정

소 관 청 통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예산을 집행·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국가재정법(법률 제17339호, 2020.6.9.)』 ‘제4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침)』 ‘Ⅲ.비목별 지침’과 ‘Ⅴ.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는 세출예산 과목별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1> 참조

<표1> 예산 과목별 적용범위

구 분	적 용 범 위
일반수용비 (210-01)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철도화물 운송 요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구분	적용범위
임차료 (210-07)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등의 일시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210-09)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용 기구 유지비
기타운영비 (210-16)	·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및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국내여비 (220-01)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 여비
사업추진비 (240-01)	·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 경비 · 외빈초청경비, 해외출장지원경비, 공식회의 및 행사 경비 등

따라서 교육원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세출예산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7.11.1.~2020.9.30.) 중 교육원 세출예산의 집행과목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관용버스(♂) 차량 정기검사비용’을 집행하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90천원)하였으며, <표2> 참조

<표2> 「시설장비유지비」 착오 집행 현황('17.11.~'20.9.)

(단위 : 원)

부서	집행사항				적정과목
	지급일자	지급건명	금액	예산과목	
●과	2020.8.10.	관용버스(♂) 차량 정기 검사	90,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9 (시설장비유지비)

‘●과 G 주무관 결혼축의금’을 기타운영비가 아닌 관서업무추진비로 집행(50천원)하였고, <표3> 참조

<표3> 「기타운영비」 착오 집행 현황('17.11.~'20.9.)

(단위 : 원)

부서	집행사항				적정과목
	지급일자	지급건명	금액	예산과목	
●과	2019.12.23.	●과 G 주무관 결혼 축의금	50,000	240-02 (관서업무추진비)	210-16 (기타운영비)

‘해움관 세탁용품 및 4분기 교육시설 소모품 관련’ 출장비를 국내여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10천원)하였다. <표4> 참조

<표4> 「국내여비」 착오 집행 현황('17.11.~'20.9.)

(단위 : 원)

부 서	집 행 사 항				적정과목
	지급일자	지급건명	금액	예산과목	
●과	2019.11.11.	해움관 세탁용품 및 4분기 교육시설 소모품 구입 관련출장	10,000	210-01 (일반수용비)	220-01 (국내여비)

또한, ‘2018년도 교육훈련 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 및 HRD 워크숍’ 경비 등을 집행하면서 임차료(1,962천원)와 사업추진비(1,680천원)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3,642천원)하였으며, <표5> 참조

<표5> 「임차료, 사업추진비」 착오 집행 현황('17.7.~'20.9.)

(단위 : 원)

부 서	집 행 사 항				적정과목
	지급일자	지급건명	금액	예산과목	
●과	2017.12.11.	2018년도 교육훈련 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 및 HRD 워크숍 회의실 대관	1,962,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7 (임차료)
		2018년도 교육훈련 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 및 HRD 워크숍 오찬	1,680,000	210-01 (일반수용비)	240-01 (사업추진비)
합 계		2건	3,642,000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지출’ 총 35건을 일반수용비가 아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집행(6,122천원)하였다. <표6> 참조

<표6> 「일반수용비」 착오 집행 현황('17.7.~'20.9.)

(단위 : 원)

부 서	집 행 사 항				적정과목
	지급일자	지급건명	금액	예산과목	
●과	2017.11.6.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지출('17년 10월)	85,36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7.12.11.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지출('17년 11월)	70,73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8.1.12.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지급	55,00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8.2.9.	2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지급	105,05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8.3.8.	3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납부	80,74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부 서	집 행 사 항				적정과목
	지급일자	지급건명	금액	예산과목	
과	2018.4.5.	4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납부	95,37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8.5.15.	5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납부	95,48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8.6.8.	6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납부	108,13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8.7.4.	7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납부	104,39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8.8.6.	8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납부	138,60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8.9.6.	9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납부	146,74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8.10.4.	10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납부	129,80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8.11.5.	11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납부	152,02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8.12.6.	12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납부	105,27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9.1.14.	2019년 1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71,17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9.2.12.	2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80,52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9.3.6.	3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104,83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9.4.2.	4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156,75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9.5.3.	5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납부	189,31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9.6.4.	2019년 6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납부	186,12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9.7.8.	2019년 7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납부	162,03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9.8.5.	2019년 8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납부	183,37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9.9.3.	2019년 9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납부	157,41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9.10.2.	2019년 10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납부	220,99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9.11.4.	2019년 11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납부	229,90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19.12.4.	2019년 12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납부	182,60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20.1.14.	2020년 1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지출요청	141,24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20.2.4.	2020년 2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지급	113,08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20.3.3.	2020년 3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지출	213,40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20.4.3.	2020년 4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314,16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20.5.6.	2020년 5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지급	482,68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20.6.2.	2020년 6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283,25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20.7.2.	2020년 6월분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지급	464,97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부 서	집 행 사 항				적정과목
	지급일자	지급건명	금액	예산과목	
●과	2020.8.4.	2020년 8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지출	384,12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2020.9.2.	2020년 9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 지출	326,92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1 (일반수용비)
합 계		35건	6,121,500		

그 결과, 『국가재정법(법률)』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교육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교육원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침)』 등에 따라 예산 과목별 적용범위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 계 청

통 보 (적극행정 모범사례)

(일련번호 : 7)

제 목 통계교육원 이러닝 콘텐츠 이용자 활용도 제고

소 관 청 통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은 국민의 통계지식 격차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통계 직무 역량개발과 능력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러닝 과정을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서비스하고 있다.

교육원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교육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 수요에 대응하고,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매년 이러닝 이용자(수료자)의 감소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원은 2018년부터 매년 「이러닝 통계교육 활성화 방안²⁾」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하는 등 이러닝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선방안을 실천하였다.

가. 일반인도 접근하기 쉬운 이러닝 교육환경 구축

교육원 이러닝의 운영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이러닝 환경을 구축하였다.

첫째,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모든 과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교육원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학습할 수 있는 애플리

2) ●과-716호(2018.2.27.) 「2018년 이러닝 통계교육 활성화 방안 보고」
●과-749호(2019.2.26.) 「2019년 이러닝 통계교육 활성화 방안 보고」
●과-683호(2020.2.27.) 「2020년 통계교육원 이러닝 내실화 방안 보고」

케이션을 2013년 개발했으나, 모바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은 2018년까지 전체 이러닝 과정 중 34개(35.0%) 과정에 불과했으나, 2019년부터 모바일 학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PC에서만 학습 가능한 PC 전용과정을,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모바일 겸용으로 확대* 개발하여 2020년 10월 현재 이러닝 모든 과정은 PC와 모바일 겸용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 모바일 겸용과정: '17년, 28개(32.9%) → '18년, 34개(35.0%) → '19년, 81개(81.0%) → '20년, 107개(100%)

또한, PC에서 학습하던 과정을 모바일에서 그대로 이어서 학습할 수 있는 ‘이어 보기’ 기능도 새롭게 개발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닝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2018년 7월 교육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검색 기능 개발과 디자인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개선하는 등 이러닝 플랫폼을 전면 개편 완료 하였다.

<그림1> 개편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둘째, 이용자가 원하는 과정을 미리 볼 수 있는 ‘미리보기’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강 신청 전 이용자가 원하는 과정을 미리 볼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서비스 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수강 신청 전에도 교육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원하는 과정 선택의 편의성도 높였다.

셋째, 이용자가 특정 기간에만 수강 신청하고 학습할 수 있었던 운영방식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는 연중 24시간 무중단 자유 학습방식으로 개편

하는 등 학습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이용자들은 수강 신청과 동시에 원하는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과정별 수강인원과 신청과정 수 제한도 폐지해 자유로운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 기관 간 이러닝 콘텐츠 공유로 국가 차원의 예산 절감에 기여

통계작성기관 중 많은 기관은 통계교육 인프라가 취약해 통계업무 종사자의 전문역량이 제대로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육원은 통계인프라가 취약한 정부·공공·민간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통계교육 전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무상 개방하고 공유하여 통계교육 확산에 노력하였다.

* 누적 제공 건수: 22개 기관 51개 콘텐츠(통계적으로 사고하기, 통계기초 및 활용 과정 등)

또한, 외부 교육훈련 기관에서 개발한 일반소양 및 국정철학·주요시책 콘텐츠를 활용해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그 결과, 기관 간 이러닝 콘텐츠 공유로 국가 차원의 예산 절감과 개방·협력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표> 2020년 기관 간 이러닝 콘텐츠 공유 현황

제공 기관	공유 기관	콘텐츠 분야	콘텐츠
통계교육원	♡♡원 등 8개 기관	데이터분석 등 3개 분야	「통계기초 및 활용」 등 15개 콘텐츠
♡♡원 등 9개 기관	통계교육원	시책교육 등 5개 분야	「청탁금지법의 이해」 등 33개 콘텐츠

또한, 이러닝 운영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을 감안, 콘텐츠 공유 기관 및 제공 기준 등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를 위해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 가이드라인(규정)³⁾」을 마련하였다.

다. 교육 영상 자막서비스로 사회적 소외계층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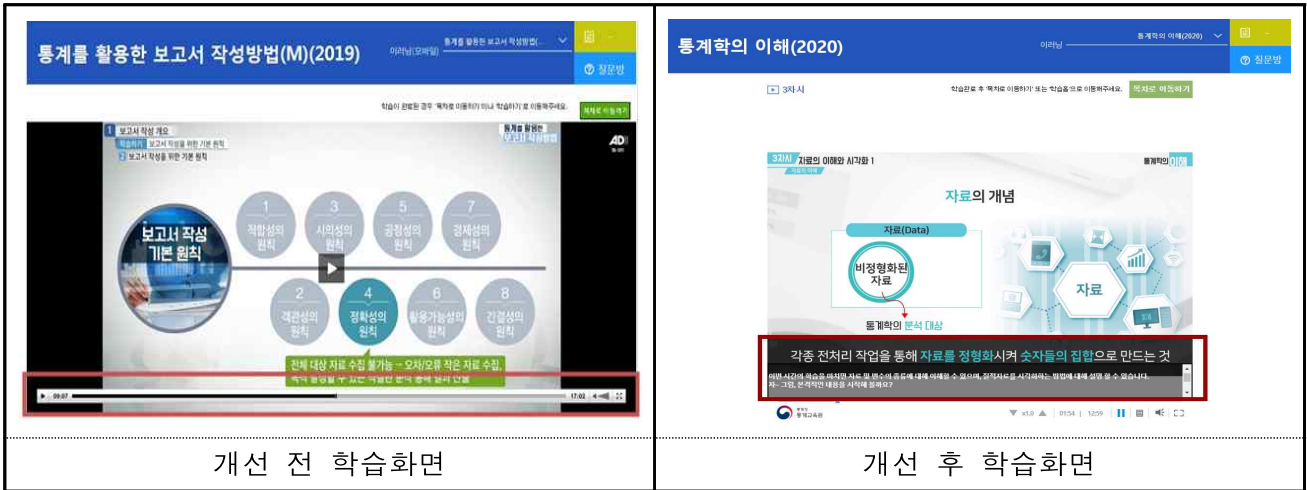
교육원 이러닝 자막서비스는 PC로 학습하는 경우에만 일부 가능했으며, 모바일 학습의 경우 플레이어 기능 제한 등으로 자막서비스가 불가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 플레이어 자막 기능(closed caption)을 새롭게 개발해 청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도 불편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통계교육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게 되었다.

3) ●과-1957호(2019.5.7.)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 가이드라인 제정(안) 보고」

모바일 기기 자막서비스는 정부 교육훈련기관 중 일부 기관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원은 정부 교육훈련기관 중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2> 이러닝 영상자막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개선 전 학습화면

개선 후 학습화면

라. 통계교육 정보 공유확장을 위한 홍보 강화 및 굿콘텐츠 서비스 인증 획득

교육원 이러닝은 2007년 서비스 이후 처음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통계교육 정보에 대한 노출*을 확장했고, 카드뉴스·인포그래픽과 리플릿 등 다양한 비주얼 콘텐츠를 기획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원 이러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유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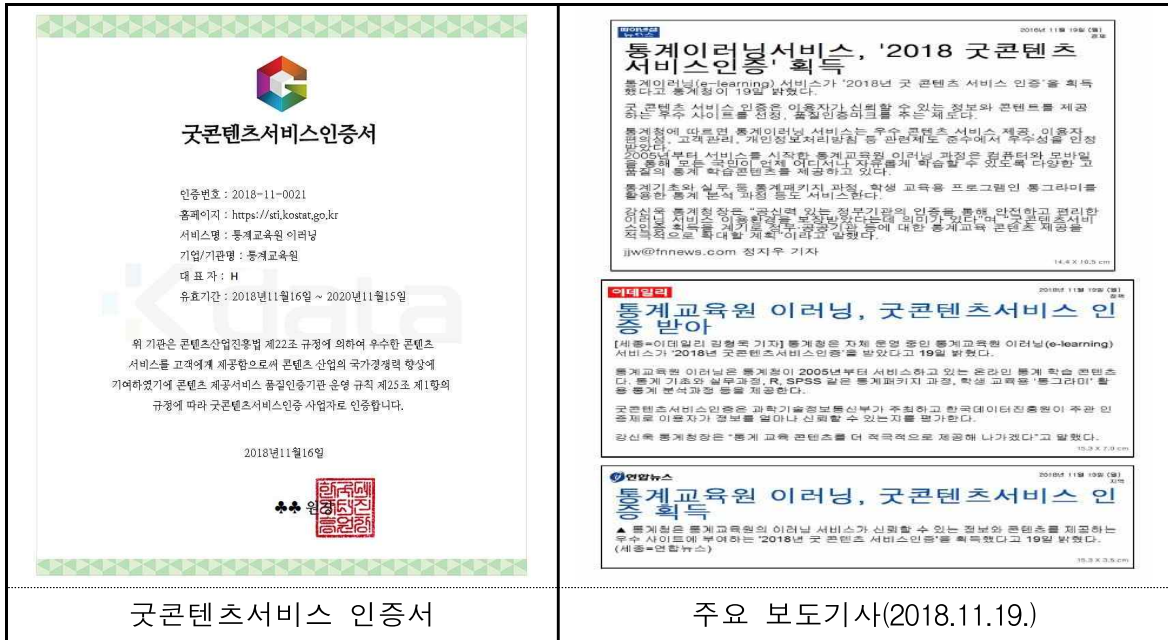
* 홍보영상 노출매체: 옥외 전광판, 통계센터 1층 로비 모니터, 정부청사 모니터, 기관공식 SNS 등

청내 홍보 전문 부서인 []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기관공식 블로그·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홍보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게재하는 등 온라인 홍보에도 집중해 기관 인지도를 높이고, 다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서 일반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통계교육 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교육원은 2018년 11월에는 []부 주최, []원이 주관한 ‘굿콘텐츠 서비스’ 인증*을 획득하여 이러닝 콘텐츠 및 서비스의 우수성과 이용자의 편의성, 고객관리,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 제도 준수에서 우수성을 인정을 받아 교육원 이러닝 콘텐츠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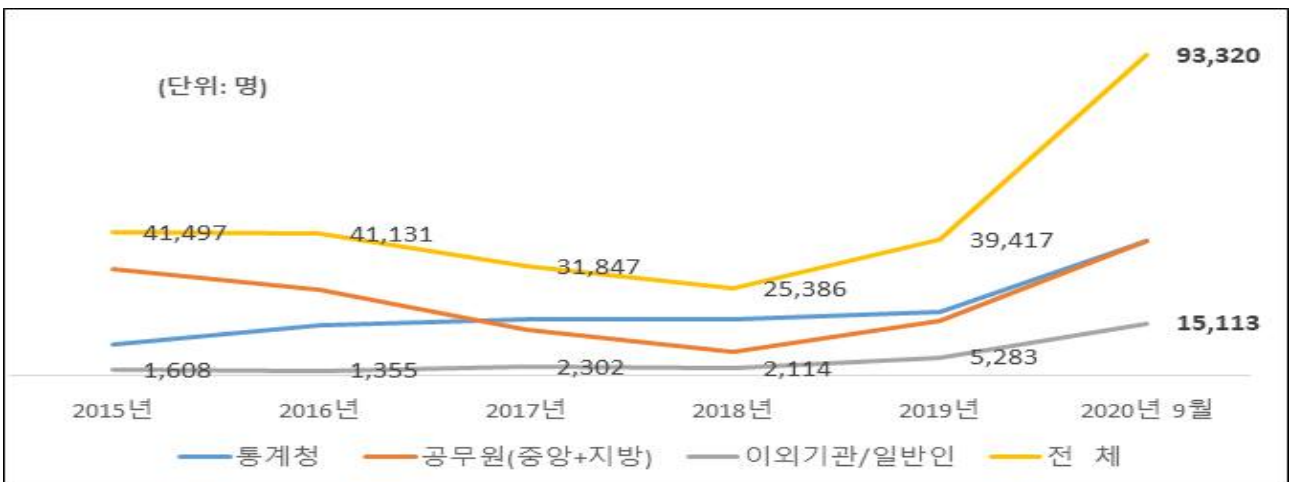
* 웹 인증마크:  굿콘텐츠서비스 Good Content Service

<그림3> 굿콘텐츠 서비스 인증서 및 인증획득 주요 보도기사



이런 노력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이던 이러닝 수료인원이 2018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9월 현재 이러닝 수료 인원은 전년대비 236.8% 증가한 93,320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림4> 연도별 이러닝 이용자별 수료인원(2015년~2020년 9월)



그 결과, 교육원은 모바일 과정 확대, 타 기관과의 이러닝 콘텐츠 공유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고 통계 기초이론 및 활용능력 향상과 통계적 소양을 넓히는데 기여 하였으며,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도 쉽게 교육원의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확대와 우수한 콘텐츠의 대국민 서비스에 크게 기여 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교육원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교육원 이러닝 과정의 이용자 확대와 우수한 콘텐츠의 대국민 서비스에 크게 기여한 ●과 ○급 J에게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